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령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94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법령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	3
※ 참고자료	9
1. 경재형벌 규정 개선 TF 개요	9
2. 제3차 경재형벌 개선 과제 22건	10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5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및 제96조).

IV. 검토의견

1. 법령위반자에게 먼저 행정명령 후 벌칙 부과

개정안은 ①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②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및 제9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 ----- ----- ----- ----- ----- ----- -----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 · 제14조 · 제30조 · 제33조 · 제38조 · 제43조 ·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제50조 · 제52조 · 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삭제

3. ~ 5. (생략)

---.

1. 제6조 · 제14조 · 제30조 · 제33조 · 제38조 · 제39조제2항 · 제43조 -----

2. ~ 4. (현행과 같음)

② 시 · 군 · 구청장은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위 이전의 상태로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5조(벌칙) -----

-----.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 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삭 제 8. · 9. (생 략)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삭 제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 위를 한 자	<삭 제> 8. · 9. (현행과 같음) 10.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 반한 자 제96조(벌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8.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	---

<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행위	현행	개정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제14조제2항)	2년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	(先)행정명령 (後)징역/벌금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관리자 등(제39조제2항)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 등(제75조제3항)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先)행정명령 (後)징역/벌금

현행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¹⁾, 현행법 제39조제2항에서는 댐, 하구둑, 운하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²⁾,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현행법 제75조제3항은 하천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 등의 주소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
- 1) **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하천시설 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법 제39조(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은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수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 ②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 3) **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 4) **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이와 관련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법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을 한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자에 대해 먼저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형벌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재 효과를 유지하면서 하천시설 설치자, 관리자 등의 동 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22년 7월 법무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의 개선(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 1.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개요).

참고로,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국민에 대한 형벌부과도 지양할 수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우선 처분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7

※ 참고자료

1.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개요⁷⁾

□ 추진배경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22.6.16.)를 계기로 법무처 경제형벌 개선 추진을 위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운영 중*('22.7.13.~)

* 기재부·법무부 차관(공동단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 3차에 걸쳐 186개 개선과제(82개 법률)를 마련, 입법화 추진 중

【 제1~3차 경제형벌 개선 추진경과 】

- ▶ (1차) 개선이 시급한 반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이 낮은 형벌규정 우선 개선
 - * 17개 법률 32개 형벌조항 개선안 마련 ('22.8.26. 규제혁신전략회의)
- ▶ (2차)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법률 등을 개선
 - * 52개 법률 108개 형벌조항 개선안 마련 ('23.3.2. 규제혁신전략회의)
- ▶ (3차)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중심 개선
 - * 22개 법률 46개 형벌조항 개선안 마련 ('23.10.12. 비상경제차관회의)

□ 추진경과

- 총 186개 과제 중 14개 개선완료, 123개 국회 既제출, 49개 잔여

총계	개선완료	국회 既제출 (법제처 일괄)	잔여과제 49건		수정목표
			개별입법 과제	추진 중단 과제	
186	14	123	39	10	176

□ 향후계획

- 경제형벌 TF 등을 중심으로 입법과제의 입법화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관계부처·국회 협의 지연 시 대안 마련 등 신속 조정 지원
-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 연구용역 및 부처 자체 발굴 과제를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4차 과제 마련 추진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형벌 정비 방안 연구 (법제연, '24.4~)

7) 자료: 환경부

2. 제3차 경제형벌 개선 과제 22건(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건)

연번	법률안명	부처	상임위	유형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노위	과태료 전환
2	대기환경보전법			과태료 전환
3	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정통부	과방위	과태료 전환
4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문체위	형량조정
5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부	복지위	기존 행정제재 등 활용
6	장애인복지법	복지부	복지위	선행정제재-후형벌
7	항만법	해수부	농해수위	선행정제재-후형벌
8	옥외광고물법	행안부	행안위	과태료 전환
9	하천법	환경부	환노위	선행정제재-후형벌
10	자본시장법	금융위	정무위	선행정제재-후형벌/ 과태료 전환
11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산자중기위	과태료 전환
12	마리나항만법	해수부	농해수위	선행정제재-후형벌
13	항만운송사업법	해수부	농해수위	과태료 전환
14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부	환노위	선행정제재-후형벌
15	물류시설법	국토부	국토위	과태료 전환
16	교통안전법			과태료 전환
17	뉴스통신법	문체부	문체위	과태료 전환
18	불공정무역조사법	산업부	산자중기위	과태료 전환
19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수부	농해수위	선행정제재-후형벌
20	해수욕장법	해수부	농해수위	형량조정 선행정제재-후형벌
21	선원법	해수부	농해수위	형량조정
22	채무자회생법	법무부	법사위	과태료 전환

주) 화학물질관리법(1차과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차과제) 개정안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⁹⁾(3차과제) 개정안은 정부제출
주) 폐기물관리법¹⁰⁾, 대기환경보전법¹¹⁾, 하천법(3차과제) 개정안은 의원발의(김위상의원 대표발의)

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2141호)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1174호)

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690호)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35호)